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1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서,
- 나.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 근거
 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, 제24조제3항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직원 자녀인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지가 필요하고,
- 특히,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·양육을 추진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보육여건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- 이를 위해,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
다. 시설개요 및 현황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('11. 6. 10. 개원)
- 소재지 :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(주암동)
- 시설규모 : 354.11㎡(지하1층 보일러실, 지상1층)

현황	영·유아용					교직원용	학부모용	기타
	보육실	유희실	상담실	화장실	놀이터	교사실	상담실	교재교구실
시설수	5	1	1	3	1	1	1	2

- 보육정원 : 48명
- 종사자 : 9명(시설장1, 보육교사5, 취사원1, 보조교사2)
- 소요예산 : 263,412천원('24년 기준, 보육료 수입 등 별도)
 - 인건비 : 256,021천원 / 운영비 : 7,391천원

○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1차위탁 : '11.4.5~'12.7.31[수탁자: 이강재, 신규위탁(공모)]
 - ※ 수탁자 개인 사유로 연구원 임시 운영 : '12.8.1. ~ 10.31.

- 2차위탁 : '12.11.1~'15.10.31[수탁자: (사)그린티처스, 재위탁(공모)]
- 3차위탁 : '15.11.1~'18.10.31.[수탁자: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, 재위탁(공모)]
- 4차위탁 : '18.11.1~'21.10.31.[수탁자: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, 재계약]
- 5차위탁 : '21.11.1~'24.10.31.[수탁자: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, 재위탁(공모)]

○ 시설 위치도 및 전경



라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'24.11.1. ~ '27.10.31.
-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 어린이집
 -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
 -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
 -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
 - 기타 아동 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('24.3.26.)

○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(2024.4.16.)

※ 작성자 :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박정경 (☎ 570-3312)